보훈심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보훈심사위원회 한시임기제 공무원 8호 경력경쟁채용 공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총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심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채용일 ~ '27.7.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휴직연장 등에 따라 총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심사	보훈심사	한시임기제 8호	ㅇ 요건 심사 제안서 및 심의 의결서 작성 등 ㅇ 의무기록 해독 및 의학 자문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보훈심사에 관한 업무 지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1. 2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한시 임기제 8호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임용예정 직무분야 ①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근무 경력(단, 의료기사직 제외) ②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훈·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근무경력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의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1. 25.)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은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시 :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1년임)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담당업무는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과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제출한 경력이 응시요건의 ‘관련 경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13.) 기준]

우대요건	○ 직무분야 실무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 기간별 차등배점 ○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관련 직무분야 : 임상의학 및 임상간호 분야(단, 의료기사직 제외),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훈.공상.산재.장애등급 등 심사분야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우대요건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원서접수 마감일('26. 11. 13.)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 경력관련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경력기간) 충족 후 관련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에 대해서만 평가
- (예시1) 2000.12.31. 자로 9급 상당 근무경력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2001. 1. 1.이후 관련분야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1년 이상에 대해 배점)
- (예시2) 2000.12.31. 자로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개월 이상 요건 충족시 2001. 1. 1.이후 관련 분야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1년 이상에 대해 배점)

○ 우대요건 : 면허증 관련

-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 두 면허증을 모두 소지한 자는 차등 배점

○ 우대요건 : 자격증 관련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별로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미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언어, 자동차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1. 3.(화) ~ 11. 13.(금)	'26. 11. 9.(월) ~ 11. 13.(금)	'26. 11. 20.(금)	'26. 11. 25.(수)	'26. 12. 14.(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자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보훈부, 나라일터, 보훈심사위원회 누리집 등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1. 9.(월) ~ 11. 13.(금)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7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팀 채용담당 (000 응시원서 재중) / 문의 : 044-202-5832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년 12월 중 임용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7.7.2.

 ***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26년 한시임기제 제8호 기준 2,378,30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044-202-583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심사	보훈심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세종시)

주요 업무	○ 요건 심사 제안서 및 심의 의결서 작성 등 ○ 의무기록 해독 및 의학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훈심사에 관한 업무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지 해석 등 질병 관련 전문적인 의학 지식 ○ 심사안건 제안 및 의결서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 관련 지식 ○ 보훈심사 기준정립 등을 위한 질병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 분석 지식
응시자격요건 / 경 력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분야 ①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근무 경력(단, 의료기사직 제외) ②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훈·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 직무분야 실무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 기간별 차등배점 ○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서류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6.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내 용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은 보훈심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8호(심사)		
응시자격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8호(심사)	
응시자격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예시, 한시임기제8호 / 심사)

② 응시자격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하고,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 응시번호』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심사	응시자격 요건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성명	

2. 응시자격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면허증	면허증명	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심사')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 선택

④ 응시자격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개월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6개월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만 기재

- 자격증(면허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명(면허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8호 / 심사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8호 / 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계획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작성일자 : / 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기관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포함	비고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 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